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12
------------	-------

발의연월일 : 2018. 10. 31.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호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
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
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
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당 해

② (현행과 같음)

1. 해당-----

2. 해당-----

의 부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당해</u>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4. <u>해당</u> ----- ----- -----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서는 미리 <u>당해</u>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 <u>해당</u>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u>당해</u> 음반등을 수 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 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u>해당</u> ----- ----- -----. -----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